

제16장 환경

제16.1조 목적

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경제 성장, 사회적 복지,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증진하는 것
- 나.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및 사회기반시설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전한 환경 정책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
- 다.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,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형성을 장려하는 것
- 라. 기후변화를 포함한 무역 관련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, 그리고
- 마. 정책 및 관행, 과학 지식, 그리고 기술 개발을 포함하는, 각 당사국의 환경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달성하고 양 당사국의 확대된 관계를 강화하는 것

제16.2조 일반원칙

1. 각 당사국은 자국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고, 천연 및 사회기반시설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2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 및 국가적 우선 순위를 수립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을 채택, 수정, 운영 및 집행하는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.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이 자국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합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.

4.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.

5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,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,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,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.

6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, 또는 면제하겠다고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에 부여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.

7.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환경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, 자국의 환경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절차 및 제도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것을 보장한다.

제16.3조 다자간 환경 협정

1.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 및 중요성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칙 간의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3.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환경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,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.

제16.4조 환경친화적 무역

1.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로서 양국 경제에 있어서 환경에 유익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환경기술,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, 환경에 유익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.

제16.5조 투명성

제 17.4조(행정절차)에 더하여, 양 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,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,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,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.

제16.6조 환경영향 검토

각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이 협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는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한다.

제16.7조 제도적 장치

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16.8조에 따른 환경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한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자국 부처 내의 사무소를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으로 지정한다.

환경위원회

2. 양 당사국은 환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된다.

3. 위원회는

가.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.

나. 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.

다.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.

라.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한다. 그리고

마. 위원회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한다.

4.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,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대로 회합¹한다.

5. 3년 후 또는 달리 합의한 대로, 위원회는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하고, 공동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 이 보고서는 또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.

이해당사자 협의

6.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.

7.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견해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, 자국의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에 따라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을 자국 대중에 알리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.

8. 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합의 종료시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.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.

제16.8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2. 양국의 국가적 우선 순위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면서, 양 당사국은, 관련된 경우, 정부와 비정부단체(상업, 산업, 교육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다)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,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다.

3.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16-가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환경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약속한다.

제16.9조 협의

¹ 위원회는 원격회의, 화상회의,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. 양 당사국이 직접 대면으로 회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, 회합 장소는 양 당사국에서 교대로 한다.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,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, 협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.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.
2. 한쪽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출된 협의 요청의 접수를 한 쪽 당사국이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된다.
3. 상호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양 당사국은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을 결정한다.
4.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위원회는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, 그리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회합한다. 접촉선은 위원회의 회합 전에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한다.
5. 심의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는 독립적인 한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.
6. 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 및 권고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.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.
7. 양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를 이행한다.
8.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.
9.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부속서 16-가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, 그에 따른 양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, 다음의 잠재적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으며, 이 목록은 양자, 지역 또는 다자적 수준에서 추구될 수 있다.

- 가. 특히, 세계무역기구, 경제협력개발기구,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,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
- 나. 다자간 환경 협정과 국제 무역 규칙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교환을 포함하여, 다자간 환경 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
- 다. 환경 규정,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교환
- 라.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및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을 포함하여,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
- 마. 무역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개발
- 바. 환경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대중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의 증진, 그리고
- 사.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상호 관심이 있는 환경에 관련된 그 밖의 영역

2. 무역과 관련된 환경 및 에너지 사안에 대한 양국 공통의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.

- 가.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,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보급
- 나.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, 법, 규정 및 그 밖의 조치

- 다. 특히, 국제 에너지 기구,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,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에너지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, 그리고
 - 라. 자국 영역에서의 에너지 활동이 환경적 우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하는 모든 조치
3.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수단을, 적절한 경우, 장려하고 활성화한다.
- 가. 상호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
 - 나. 환경 전문가 및 관리 인력의 교류
 - 다. 기술적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
 - 라. 워크숍 및 우수 관행의 교환, 그리고
 - 마. 양 당사국이 결정한 협력의 그 밖의 모든 유형
4. 협력 활동의 확인을 원활화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이후 첫 번째 절차로서 양국의 최초 우선 순위 목록을 교환한다.
5. 각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협력을 위한 잠재적 영역의 확인과 상호 결정한 협력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자국의 비정부 분야 및 그 밖의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.